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65
----------	------

발의연월일 : 2019. 4. 12.

발 의 의 원 : 김재우 의원

김원규 의원

김지만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전경원 의원

1. 제안이유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식품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등 시행의 지도를 규정함(안 제6조)
- 마.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아.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조례안 : 붙임
- 나. 관계법령 : 붙임(「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 계획
2. 식품등 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3. 식품등 기부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5. 기부식품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시장은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대구광역시·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기부법)

[시행 2018. 4. 28] [법률 제15538호, 2018. 3.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41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 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 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 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 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 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2. 3.>

1.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목개정 2016. 2. 3.]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삭제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10조(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8. 3. 27.>

②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부칙 <제15538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